

··• 목 차 •··

1. 감사의 목적1
2. 감사 기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2
4. 감사반의 편성3
5. 감사 일정 및 장소4
6. 감사 요령5
7.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7
8.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서류제출사항7
9. 기탁7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국회에 부여한 입법기능과 재정 및 국정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임.

2. 감사기간

- 가. 기 간
 - 10월 10일(화) ~ 10월 27일(금)
- 나. 중앙감사 : 7일
 - 기 간:10월 10일(화), 10월 12일(목), 10월 16일(월), 10월 17일(화), 10월 19일(목), 10월 25일(수), 10월 27일(금)
- 다. 지방감사 : 1일
 - 기 가:10월 23일(월)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구 분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소관	○ 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새만금개발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로공사 ○ 한국철도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부동산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가철도공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국토정보공사 ○ 국토안전관리원 ○ ㈜에스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주택관리공단(주) ○ 코레일관광개발(주) ○ 코레일로지스(주) ○ 코레일테크(주) ○ 코레일테크(주) ○ 코레일테크(주) ○ 항공안전기술원 ○ 새만금개발공사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건설기술교육원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국립항공박물관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지방자치 단체	o 서울특별시 o 경기도			
닌세	(2)			
계	33			

4. 감사반의 편성

- 가. 감사는 1개의 감사반(전원위원)으로 구성하되 10.23.(월) 지방자치단체 국감의 경우에는 2개의 반(감사 1·2반)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 나. 그 외 감사실시 중 분반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합동감사반>

	7].2] ()] ()] 7]	7] [] -] (-	·) 日ム) ri) スァ) \			
	감사위원장 :		되불어민주당) (1보시민주당)	7) 1) 6) 6)	-1-1 n/-	7 ml Al =1\
	감사위원 :	•	터불어민주당)			. , ,
	14	김두관	"	"	강대식	"
	"	김민철	"	"	권영세	"
	"	김병기	"	"	김학용	"
감	"	김병욱	"	"	金熙國	"
	"	김수흥	"	"	박정하	"
사	"	맹성규	"	"	서범수	"
	"	민홍철	"	"	서일준	"
위	"	박상혁	"	"	엄태영	<i>'</i>
	14	이소영	"	"	유경준	"
원	"	장철민	"	"	정동만	"
	"	조오섭	"	"	심상정 (정	병의당)
	"	한준호	"			
	"	 허 영	"			
	"	허종식	<i>"</i>			
	"	홍기원	"			
	① 위원회 직원(21인)			② 의원보좌관(29인)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장지원			③ 정책연구위원(3인)		
사	입법심의관 이현정 체정시자 이건으			④ 속기사(5인)		
	행정실장 이경우 입법조사관 황선호 강재구					
무	/ 전중인 이재명					
보	"	_	규 서정욱			
조	"		현 정혜윤			
x	"		승 류지호			
자	기 기 기	임주	-			
	행정관 주무관	이성 최우	운 희 박은영			
	T 下包 		의 작는경 미 정현주			
		김정				

※ 지방감사반 위원·사무보조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0. 10.(화)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산하기관장 배석)				
10. 11.(수)		자 료 조 사			
10. 12.(목) 10:00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10. 13.(금)		자 료 조 사			
토・일	공 휴 일				
10. 16.(월)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건설기술교육원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10. 17.(화) 10:00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10. 18.(수)		자 료 조 사			
10. 19.(목) 10:00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국회)			
10.20.(금)	자 료 조 사				
토・일	공 휴 일				
10.23.(월) 10:00	서울특별시 경기도	서울특별시청(서울) 경기도청(수원)			
10.24.(화)	자 료 조 사				
10.25.(수) 10:00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의실 ^{들원} (인천)			
10.26.(목)	자 료 조 사				
10.27.(금) 10:00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종합감사 (확인감사) >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국회) (※ 산하기관장 배석)			

6.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감사는 국회 또는 수감기관 등에서 실시하되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2) 수감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로부터 선서와 보고를 받고 감사질의를 한다.
 -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되, 질의시간(주질의, 보충질의 등)은 증인신문시간을 포함한다.
 - 감사질의 중 영상 및 프리젠테이션은 사용 가능하나, 음성 등 음향이 나오는 경우 간사간 합의된 경우에만 송출한다.
- (3) 감사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다.
- (4)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 관계 부서장 등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또는 진술을 듣는다. 증인, 감정인에게 증언 또는 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한다.
- (5) 보고, 서류제출,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법정기일 내(7일전 송달)에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자진보고, 자진제출토록 할수 있으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본인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6) 감사의 공개·비공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주요 감사사항

- (1)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
- (2) 2023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과 그 실적
- (3)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 (4) 주요현안
- (5) 각종 민원 처리현황
- (6) 기타 감사위원이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는 사항

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

- (1) 감사대상기관의 증인(기관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되, 관계부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중앙부처는 실·국장급 이상
 -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은 임원급(상근)·주요본부장·기획조정실장 이상
- (2) 기관증인 채택 후 감사대상기관에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의 직위에 새로 부임한 자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된 것으로 하며, 공석일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자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것으로 한다.
- (3) 위원회는 그 의결로 관련인사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할수 있다.

라. 증인 선서방식

- (1)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2) 증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함께 선서하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 에게 일괄 제출한다.
- (3)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이 기립하여 받는다.
-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를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의 벌이 있음을 설명한다.

마. 감사진행순서

- (1) 감사개시 선언(위원장)
- (2) 위원장의 인사
- (3) 증인선서
- (4) 업무현황보고 청취
 - ○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 업무현황보고
- (5) 정책질의 및 답변(증인 신문 및 증언 등 포함)
- (6)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 (7) 감사종료선언

7.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국정감사종료 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회 의결로 채택한다.

8. 감사실시대상기관의 서류제출사항

- 가. 2023년도 업무현황
- 나. 2023년도(9월 기준)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
- 다. 2023년도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현황과 그 실적
- 라. 2022년도 및 2023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마. 2023년도 각종 민원 처리현황
- 바.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등(사규 포함)의 제정·개정· 폐지 현황
- 사. 제21대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한 업무처리내용
- 아. "가" 항 부터 "사" 항까지 관련된 자료
- 자. 기타 감사위원 각자가 요구하는 서류 및 자료

9. 기타

- 가. 감사활동비, 출장여비, 증인·참고인 출석여비 등 제반 소요경비는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나. 감사일시 및 감사장소, 감사방법 등 세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